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 改正 定款

第一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라 稱한다.

第2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3條 本會는 全國의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
圖書館, 特殊圖書館, 其他 圖書館施設의 提携下에
圖書館事業의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韓國의 文化向上
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章 事 業

第4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의 事業을 한다.

1. 圖書館의 管理, 運營, 技術에 관한 調查研究 및
其 實施 促進
2. 機關誌 및 圖書館과 讀書에 관한 資料의 編刊
3. 圖書館 職員의 教育 및 地位向上
4. 圖書館의 普及 및 設立經營의 指導
5. 書誌事業 및 良書의 選定 普及
6. 讀書運動의 推進 및 指導
7. 圖書館用品의 規格化 및 그 普及
8. 圖書館關係 資料室의 設置
9. 各國의 圖書館團體 및 關係機關과의 連絡 提携
10.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三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4種으로 한다.

1. 團體會員……圖書館, 學校, 其他 圖書館施設을
가진 團體
2. 個人會員……圖書館, 其他 圖書館施設의 職員 및
圖書館學을 履修한 者로서 本會의 趣
旨에 賛同하는 者.
3. 贊助會員……本會의 事業을 贊助하는 個人 또는
團體
4. 名譽會員……本會에 貢獻이 있는 人事로서 理事
會가 推薦하는 者

第6條 本會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入會를 申請
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條 本會의 會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入하여야 한
다.

但, 會費의 等級과 金額은 理事會에서 定하여 名譽
會員에게는 會費를 받지 아니 한다.

第8條 本會의 會員은 脫退 및 除名에 의하여 그 資

格將을 衰失한다.

但, 除名處分은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履行치 않은
者 또는 本會의 名譽를 損傷한 者에 대하여 理
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行한다.

第四章 任 員

第9條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專務理事 1人
3. 理事 13人 以內(會長 專務理事 包含)
4. 監事 2人
5. 評議員 40人 以內

第10條 本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한다.
2. 專務理事는 會長을 捕佐하여 會務를 統理하며 會
長 有故時에는 그 任務를 代行한다.
3.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여 第20條의 事項을 審議
執行한다.
4.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每年 2回以上 監查하여 總
會에 報告한다.
5. 評議員은 評議員會를 構成하여 第18條의 事項을
議決한다.

第11條 本會 任員의 選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會長, 專務理事, 理事 및 監事는 評議員會에서
秘密投票로 選出한다.
2. 評議員은 團體會員 및 個人會員 中에서 總會가
이를 選出하되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및 道別로
會員數에 比例하여 館種別로 選出한다.
但, 市·道別 評議員數는 1人 以上으로 한다.
3. 會長, 專務理事, 理事 및 監事의 就任은 主務部
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12條 本會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但, 任員中 缺員이 생길 때에는 評議員會에서 補選
하되 補任者의 任期는 前任者的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3條 本會의 任員은 任期滿了時라도 後任者가 就任
할 때까지 그 任務를 執行한다.

第五章 會 議

第14條 本會의 會議는 總會, 理事會, 評議員會의 3種
으로 하되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15條 本會의 總會는 團體會員의 代表者 및 個人會員으로 構成하고 會員 5分之 1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한다.

1. 定期總會는 每年 1回 年度初에 開催한다.
2. 臨時總會는 다음의 境遇에 召集할 수 있다.
 - (1) 理事會 또는 評議員會에서 議決할 때
 - (2) 監事が 連署로 要求할 때
 - (3) 會員 10分之 1 이상이 議題를 明示하여 要求 할 때

第16條 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定款에 定해진 事項.
2. 事業報告
3. 豫算, 決算의 報告
4. 定款의 變更
5. 其他 重要한 議決

第17條 本會의 評議員會는 評議員 過半數 以上的 出席으로 成立한다.

1. 評議員會는 年 3回以上 開催한다.
2. 臨時評議員會는 다음의 境遇에 召集할 수 있다.
 - (1) 會長이 必要를 認定할 때
 - (2) 理事會에서 議決할 때
 - (3) 評議員 3분의 1 以上이 議題를 明示하여 要求 할 때

第18條 評議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定款에 定해진 任員의 選出
2. 事業報告의 承認
3. 豫算決算의 承認
4. 諸般規程의 承認
5. 定款의 改正案 및 總會에 附議할 案件의 審議
6. 其他 必要한 事項의 議決

第19條 本會의 理事會는 다음과 같이 召集하여 理事의 過半數出席으로 成立한다.

1. 會長이 必要를 認定할 때
 2. 理事 3분의 1 以上이 要求할 때
- 但, 緊急을 要할 때는 會長이 書面 또는 口頭로써 理事의 意見를 얻어 理事會에 代할 수 있다.

第20條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定款에 定해진 事項
2. 事業報告의 審議
3. 豫算・決算의 審議
4. 諸般 規程의 審議
5. 總會 및 評議員會에서 議決한 事項의 審議 執行
6. 其他 重要한 會務의 審議 執行

第21條 本會 諸會議의 議事는 出席者 過半數로써 決定하여 可否 同數일 때는 會長이 決定한다. 缺席會員은 出席會員에게 表決權을 委任할 수 있다.

第六章 事務局

第22條 本會는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事務局의 職員은 會長이 任免하되 事務局長의 任免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事務局의 職制와 業務處理를 위한 諸規程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七章 財政

第23條 本會의 經費는 下列의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1. 會費
2. 寄附金 또는 贊助金
3. 基本資產收入金
4. 事業收入金
5. 其他收入金

第24條 本會의 財政上 緊急을 要할 때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豫算의 變更를 할 수 있다.
但, 次期評議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와 같다.

第八章 部會 및 委員會

第26條 本會에 專門委員會를 두고 專門委員會內에 分科委員會를 둔다. 專門委員會에 관한 規程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27條 本會에 下列의 部會를 둔다.

1. 公共圖書館部會
2. 大學圖書館部會
3. 學校圖書館部會
4. 特殊圖書館部會
5. 其他 必要한 部會

第28條 本會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必要한 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九章 地區協議會

第29條 本會에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및 各道別 地區協議會를 둘 수 있다.

第30條 地區協議會에 事業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但, 補助金을 받고자 하는 地區事業은 本會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十章 解散 其他

第31條 本會를 解散코자 할 때는 總會의 議決과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2條 本會를 解散할 때의 殘餘財產은 總會의 議決에 의하여 本會와 類似한 目的을 가진 公益團體에
(12면에 계속)

★ 감사장 수상자

金 判 永

1923年 6月 17日生

근무처 : 전경북교육위원회 교육감



(수상하고 있는 김판영 씨 (左))

功績事項

1) 1964年부터 1972年 2月 4일까지 8개년間 慶北敎育行政의 責任者로 있으면서 敎育의 기반을 조성하는 길은 學校圖書館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信念으로 道內 모든 初中高等學校에 도서관(실) 또는 讀書코너를 設置하게 하여 학교도서관의 發展을 적극 도

(6面에서 계속)

습니다. 그래서 종회명의로 외부에 우리의 자세를 표명하는 선언서를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전문위원회에서 문안 작성하여 선언하기
로 찬성 결정함——

장일세(국립중앙도서관) 우리가 매년 당국에 전의문을 제출하여 되는 일도 있고 안되는 일도 많았지만, 올해는 세계도서의 해인 만큼 우리의 전의내용이 모두 반영되도록 당국에 적극적으로 전의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회장) 이 의견도 전문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범(부산교육대학 도서관) 금년에는 독서주간, 도서관주간 행사를 통하여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에게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인식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콤이나 유명인사를 동원하여 국민에게 강한독서열을 가지도록 자극시켜주고 적극적인 행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희(국방과학연구소) 금년도 전의사항에 대학도서관의 관장은 전문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포함시키고, 국회와 국립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양립시키지 말고 좀 더 국가의 대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의문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찬성하다——

의장(회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72년도 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하였음.

2) 圖書擴充計劃(1~2次 4個年計劃)을樹立하여 道內 全國民學校가 보유한 책이 1964年에 195,000卷인 것을 1971年末現在 1,224,255卷으로學生 1人當 1.5冊으로 增加시켰고 中高等學校는 1964年에 147,300卷에서 1971年末現在 1,295,115卷으로學生 1人當 5冊으로 增加시키는 實績을 거두었음.

3) 어려운 道敎育財政에서 7,031,557원을 할애하여 總建坪 400坪의 學生圖書館을 設立하여 學生들의 學習 환경을 조성시키고 학교도서관의 센터 역할을 담당시켜 도서관 발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도모하여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음.

河 景 根

1932年 4月 1日生

근무처 : 중앙대 학교도서관장

功績事項

1) 1968年 8月에 同校 圖書館長에 被任되어 지금까지 館界發展에 畫力해 왔으며 지난 1971年度 第10回 全國圖書館大會를 同大學校에서 盛大히 開催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데 至大한 貢獻을 하였음.

(14면에서 계속)

寄附한다.

第33條 本定款은 總會의 議決이 아니면 變更할 수 없다.

第34條 本定款의 施行上 必要한 規定 및 細則은 別途로 理事會에서 定할 수 있다.

附 則

本定款은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로 施行한다.

附 則

(1) (施行) 本定款은 1956年 4月 20일부터 施行한다.

(2) (改正) 本定款은 1961年 4月 23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3) (改正) 本定款은 1962年 1月 28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4) (改正) 本定款은 1963年 1月 20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5) (改正) 本定款은 1965年 2月 13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6) (改正) 本定款은 1968年 5月 28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7) (改正) 本定款은 1973年 2月 1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 고딕으로 인쇄된 부분이 개정된 부분임.